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9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이정문·전현희·이학영

민형배 · 김원이 · 한민수

채현일 • 어기구 • 문진석

이인영 · 차지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 국법인 또는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 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 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 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재무안 정 사모집합투자기구(PEF)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・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"을 "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22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같은 조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

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44조(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제44조(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 한 과세특례) ① · ② (생 략) 한 과세특례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<신 설>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22에 따 른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같은 조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 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 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 여 익금에 산입한다. ③ (생 략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 (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금 융채권자(「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」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----기업구조조정투 투자회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자회사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.

	,
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의 규	⑥
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	
관한 명세서의 제출, 세액 감면	
의 신청, 그 밖에 필요한 사항	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